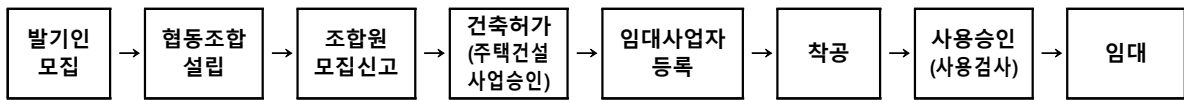


인천 서구 「민간임대주택사업」 유의사항 안내문

‘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(유사한 형태의 민간임대주택사업 포함)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시민께서는 **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**를 당부드립니다.

■ ‘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’ 이란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‘민간임대주택법’)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,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(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)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사업



■ 조합원 모집방법 및 가입시 유의사항

- 민간건설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「민간임대주택법」 제5조의3에 따라 **인천 서구청에 조합원 모집 신고 후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**해야 합니다.

(유의사항: 피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)

- ✓ 가입 시, 계약자 본인의 **지위를 우선 확인**하여야 합니다.

발기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협동조합의 설립을 주도하는 주체로, 발기인 모집을 위한 절차 등은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. - 발기인 상태에서 출자금반환 및 철회 등에 관련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투자금 반환받기 어려움.
조합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공급 목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의 일원으로서 협동조합 설립 및 조합원 모집신고 이후 모집된 주체. - 조합원 모집신고 시, 건설대지의 80% 이상에 해당하는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함.

- ✓ **출자금 반환 규정 無**: 발기인 상태에서 출자금 반환 및 철회 관련 법적 규정 없음
- ✓ **사업지연 및 사업계획 미확정**: 발기인·조합원 모집단계에서 홍보하는 사업계획(안)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임
- ✓ **계약서 확인**: 출자금 환급 및 추가 납입금 등에 관한 규정 등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

※ 2023. 12. 1. 기준 **인천 서구청의 「민간임대주택법」 제5조의3항에 따른 “조합원 모집신고” 수리 현황이 없음**을 알려드립니다.

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과